

유아교육연구소 규정

제정 2013. 02. 28 개정 2014. 08. 01

제1조 (목적) 경동대학교 유아교육과의 특성화를 통한 학과 경쟁력 강화,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유아교사 배출을 위한 교수학습 연구 수행, 유아교육의 실천 및 관련 정책에 기초한 연구 및 프로젝트 운영 자료의 수집·분석·활용 방안 제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 방안 도출을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08. 01.)

제2조 (명칭)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동대학교 내에 ‘유아교육연구소’(Research Institut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연구위원) ① 이 연구소의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소속의 유아교육과 및 관련 전공분야의 전임교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14. 08. 01.)

② 초빙된 전문가는 위촉 연구교수 및 위촉 연구원으로 임용되고, 수행하는 연구과제 종료시 임용 계약이 자동해지 된다.

③ 위촉 연구교수 및 위촉 연구원의 임용 기간은 1년이며 활동이 우수한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4. 08. 01.)

제4조 (사업) 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영유아교육 및 보육 발전에 관한 연구사업.
2. 영유아의 발달 및 교육이론의 개발과 정립에 관한 연구.
3. 부모 및 영유아교보육과 관련된 인적·물적·환경에 관한 연구.
4.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교육매체 제작 및 출판.
7. (삭제 2014. 08. 01.)
8.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부모교육·상담·강의 등 서비스 제공.
9. 기타 영유아교보육과 관련된 사업 및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4조의2 (기능) 이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조신설 2014. 08. 01.)

- ① 연구소는 유아교육과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구 분야 및 연구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색하여 공동연구를 주관하는 기능을 한다.
- ② 연구소는 유아교육과의 연구수주 실적 강화를 위하여 학과 특성에 적합한 연구수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진행하는 주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 ③ 연구소는 경쟁력있는 예비교사양성을 위한 관련 연구 및 교육을 기획, 진행하는 주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 ④ 연구소는 유아교육과와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를 증진 할 수 있는 관련 연구 업무를 주관하는 기능을 한다.
- ⑤ 연구소는 유아교육정책에 기초하여 유아교육과의 발전을 위한 관련 정보 제시 및 연구 사업을 주관하여 진행하는 기능을 한다.

제5조 (조직 및 소장) ① 연구소의 조직은 연구소장 1인, 운영위원회, 조교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소의 소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임무는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자문기구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08. 01.)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본 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임교수로 하되, 당연직 연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③ 위원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 사항)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2. 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사업계획에 관한 계획과 결과
3. 연구소의 예산 심의와 결산
4. 연구 사무의 평가 및 집행 예산의 조정
5. (삭제 2014. 08. 01.)
6.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조교) 이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장은 조교를 임명,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팀) 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구팀을 설치 및 폐지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팀의 수행팀장) ① 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장은 연구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운영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연구수행팀장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4. 08. 01.)

② 연구수행팀장의 임기는 연구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어 연구의 종료와 함께 종료된다.

제13조 (연구팀의 책임연구교수 및 공동연구원) (개정 2014. 08. 01.)

① 책임연구교수는 연구조교수, 연구부교수, 연구교수로 구분하되,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특정 연구 수행의 전문가로서 교내외 전임교수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4. 08. 01.)

② 공동연구원은 석·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특정 연구 수행의 전문가로 한다.(개정 2014. 08. 01.)

③ 책임연구교수 및 공동연구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전문개정 2014. 08. 01.)

제14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

1. 교외 연구비 및 수탁 과제비
2. 찬조금과 기타 보조금
3. 본 대학교의 연구 지원비 및 운영 지원비

제15조 (연구비 및 관리비) ①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예산, 결산) ① 연구소의 예산편성은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구소의 예산편성과 결산 및 집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